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자금 지원사업의 융자 실적이 적고 유사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자금의 준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.

나.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된 자금, 상환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 주거담당, 전화 : 3396-5392, FAX : 3396-8736, E-mail : kmsin@junggu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된 자금, 상환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